

CBDC 도입에 대한 효익 검토

조세행정절차 간소화를 중심으로

Index

- 01 I. 요약
- 02 II. (현행) 조세행정구조
- 10 III. CBDC발행의 효익 & 비용

I. 요약

본고에서는 CBDC의 도입 시 조세행정 관점에서의 효익을 CBDC의 거래추적 및 식별의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현대 경제에서 거래는 경제활동의 기본단위로 거래 과정에서 소득/소비/자본(재산)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단위 거래에 대해 정의하고 이에 따라 파생되는 개념인 “소득”, “소비”, “자본”에 대한 다양한 해석가능성을 우선 제시한다. 이를 근거로 현대 조세제도에서 조세평등주의에 입각하여 담세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소득/소비/자본의 개념에 대해 정의의 당위성을 서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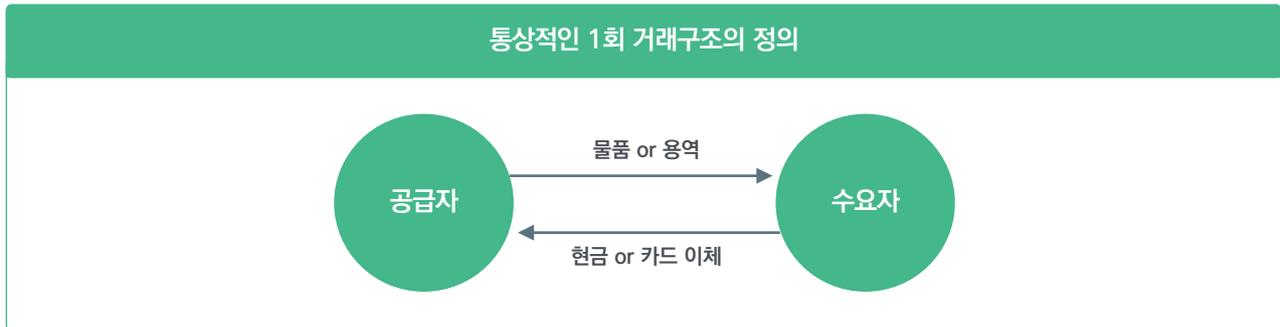
더 나아가 개인소득세에서 열거주의(소득원천설)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와 법인소득세상 부분포괄주의(순자산증가설)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를 검토한 뒤,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을 통하여 경제 주체들의 소득과 소비를 측정하는 거래 기반 방식, 1) 세금계산서 2) 신용카드 매출전표 3) 현금영수증 발행 등의 방법을 보여주고, 거래의 식별과 과세를 난해하게 만드는 탈세의 사례를 제시한다.

위에 제시된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CBDC가 도입되었을 경우 탈세나 거래신고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유, 더 나아가 우려되는 문제점을 함께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II. (현행) 조세행정구조

2.1. 한국 세법의 구조

2.1.1. 거래구조



거래라고 하는 행위는 현대 경제시스템의 기초단위로, 단순하게는 A와 B가 약정하여 물건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는 **“1회성 과정”**을 말한다. 경제시스템의 관점에서 본다면, 토지나 산지, 바다 등을 통해 자원을 취득, 이를 판매 및 가공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며 경제 내 다른 주체로 하여금 필요한 재화를 소비할 수 있게 만드는 **“연쇄적 과정의 일부”**를 의미한다.

1회성 개별 거래에서 식별가능한 내용은 **“소득”, “비용”, “부가가치”**이다. 소득이라 함은 특정 재화를 인도하며 수취한 대가의 총액을 의미하며, 비용이라 함은 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한 **“유형”** 혹은 **“무형”**의 자원을 의미한다. **“부가가치”**라 함은 소득과 비용이 확정되면 자연스럽게 징표 되는 것으로 발생한 **“소득 - 비용”**의 단순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발생한 부가가치의 합을 통하여 해당 국가가 산출해낸 총소비¹를 결정한다.

2.1.2. 소득과 비용의 개념

2.1.1.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1회성 거래에서 파생되는 소득, 비용, 부가가치 개념은 얼핏 보면 대단히 단순한 구조로 쉽게 정의할 수 있을 듯 보이나, 명목가격을 넘어서 **“기회비용”**이나 **“대체가능성”**을 고려한 실질가격까지 고려할 경우 그 금액의 산출은 대단히 복잡해진다. 따라서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정의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곧 큰 틀에서 나타나는 거시적인 소득과 비용의 금액을 구성하는데 필수적이다. 설명을 위해 간단한 예시로 밀농사를 짓는 농부와 카스텔라만 판매하는 빵집을 운영하는 제빵사를 대조해보자.

¹ 삼면등가에 따른 총생산

농부의 경우 자신의 노동을 투입하여 토지를 통해 산출물인 밀을 생산한다.

▶ 농부의 밀에 대한 단위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다.

- W (노동시간, 투입자본) = 밀의 총 생산량
- $TC(W) = \text{노동시간} * (\text{시간 당 비용}) + \text{투입 씨앗의 개수} * (\text{씨앗 당 비용})$
가정1) 계산의 편의를 위해 “시간 당 비용”과 “씨앗 당 비용”은 **Constant**하다고 가정한다.
가정2) 계산의 편의를 위해 농부에게는 별도의 자본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 단위 밀의 원가 = $TC(W) / W$ (※ 부가가치의 금액: $P * W$ (소득) - $TC(W)$ (비용))

(주요 변수)

- A. 시간 당 비용
- B. 씨앗 당 비용

제빵사의 경우 자신의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산출물인 카스텔라 빵을 생산한다.

▶ 제빵사의 카스텔라에 대한 단위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다.

- C (노동시간, 투입자본) = 카스텔라의 총 생산량
- $TC(C) = \text{노동시간} * (\text{시간 당 비용}) + \text{투입 재료의 용량} * (\text{재료 당 비용}) + \text{자본재 규모} * (\text{표준소요시간} / \text{표준내용연수})$

가정1) 계산의 편의를 위해 “시간 당 비용”과 “재료 당 비용”은 **Constant**하다고 가정한다.

가정2) 계산의 편의를 위해 제빵사에게는 별도의 자본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 단위 카스텔라의 원가 = $TC(C) / C$ (※ 부가가치의 금액: $P * W$ (소득) - $TC(W)$ (비용))

- A. 시간 당 비용
- B. 재료 당 비용
- C. 자본재 비용

※ Keyword

1. **역사적 원가주의**: 취득원가주의로 불리며, 거래시점에 제공한 화폐상당 금액을 원가로 간주한다.
(기회비용, 시장가격 차이)
2. **현행원가**: 현재시점에서 동등한 경제적 효익을 유입시킬 수 있는 재화의 취득가액을 말한다.
(시장가 + 부대비용)
3. **실현가능가치**: 영업의 과정에서 유효시장내 즉시 실현가능한 이익의 금액
4. **공정가치**: 기회비용 및 활성시장내 거래가격 등을 반영한 가격 산정

쟁점1) 노동에 대한 시간당 비용 산정문제 (대체가능성, 특수이해관계자간 거래)

경제학에서는 비용의 개념을 따짐에 있어서 “기회비용”을 고려한다.

기회비용이라 함은 특정 재화를 선택함에 있어서 포기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甲에게 A(5,000), B(4,000), C(3,000) 선택지가 있을 때, A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은 B로 4,000원이고, B, C의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은 A로 5,000원이 된다. 이는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기회손실을 의미한다. 편의상 발생 효용이 기수이고 비교 가능하다고 가정할 경우, A 선택에 따라 1,000의 효용상 이익이 발생하고, B, C의 선택에 따라 각각 -1,000, -2,000의 손실이 발생한다.

만일 위의 예시에서 제빵사의 본래 직업이 변호사이며, 제빵사이므로 발생하는 소득보다 본디 더 큰 소득을 벌 수 있었다고 한다면 투입 시간 대비 기회비용 차이 상당을 비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공정가치 관점 기회손실 산식: 발생명목소득 - (정상소득 - 명목소득) - 명목비용

쟁점2) 투입자본의 기간비용 산정문제 (기간비용, 차입원가 자본화(자기자본부분))

금융상품이 아닌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자본에 대한 투자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상기의 예시에서, 농부의 “씨앗의 구매”, “재료의 구매”, “자본재의 구매”의 결과는 투자를 함으로써 자본이익을 획득할 능력을 상실을 의미한다. 이를 기간비용으로 보아 비용에 반영할지 문제가 발생한다.

상기 예시에서 농부의 이자 산정기간은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기간이고, 제빵사의 경우 원재료의 매입에서 제품의 판매, 자본재의 매입에서 내용연수 종료기간까지를 의미한다. 수확까지 장기가 소요될수록 기간비용이 증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공정가치 관점 투자비용 산식: 명목소득 - 명목비용 - (투입자본 * 기간별 이자율)

쟁점3) 시장가격 차이금액 산정문제

경우에 따라 긴급한 상황이나 강박에 의하여 원재료나 기타 자본재를 시장가격보다 높게 구매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능력의 문제로 매입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에 대해 비용에 반영 해야 하는지 여부, 반대로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저렴할 경우 그 차이를 소득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원가 관점 산식: 명목소득 - 명목비용 - (명목원가 - 정상원가)

쟁점 1, 2, 3은 모두 공통적으로 거래가격을 넘어서 거래에 부차적인 기회비용이 반영됨에 따라 소득 혹은 비용이 바뀌게 된다. 그 결과 관점차이에 따라 소득이나 비용의 금액이 달리 판단되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난점이 발생하게 된다.

2.1.3. 조세법률주의(조세법정주의) & 과세요건법정주의 (헌법 제59조)

조세법정주의 및 과세요건법정주의는 소득이나 비용의 맥락과 별개로 과거 균주제 시절 조세저항에 따라 규정된 원칙이다. 하지만 후속적으로 등장한 조세평등주의상 공정의 개념이 도입되고, 소득세와 소득에 대한 누진세가 도입됨에 따라 현대사회에서는 소득/소비/재산이 담세력을 가진 것으로 규정되었다. 과거의 수염/창문세 등과 다르게 소득이나 소비가 담세력을 가진 과세물건이 됨에 따라 추상적인 소득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이 필요하게 되었고, 해당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 문제와 충돌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개인소득세는 개인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소득의 원천을 규정하는 소득원천설에 따른 열거주의로, 공적인 기구로 간주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순자산 증가설에 따른 부분포괄주의의 소득세 구조를 갖게 된다.

2.2. 조세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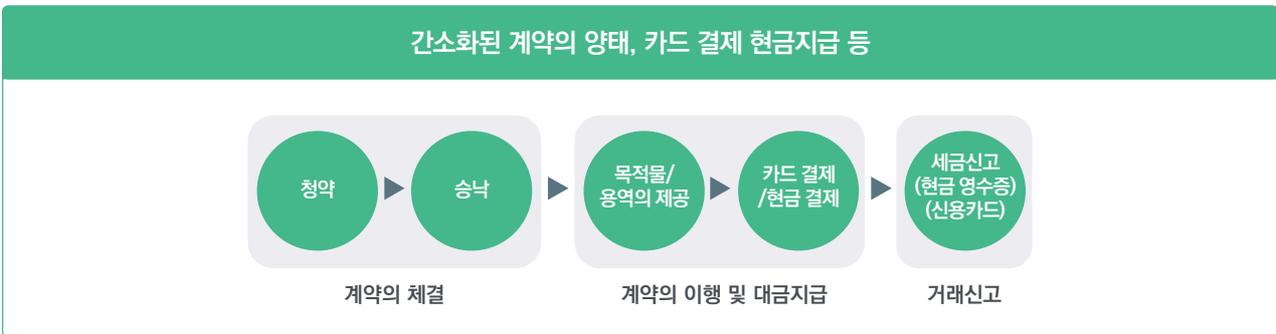
조세를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이 있으나, 본 파트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보통세의 종류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세	법인세
과세대상	개인의 소득	법인의 소득
납세의무자	개인	법인
기장 의무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	복식부기
과세대상 소득	열거주의 (소득원천설)	(부분)포괄주의 (순자산증가설)
납세항목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 기타소득	법인세
부가가치세	(간접세) 방식으로 양 당사자 모두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 (한국의 경우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을 통해 관리) <i>※ 미국의 Sales Tax 과세 방법과는 차이가 있음.</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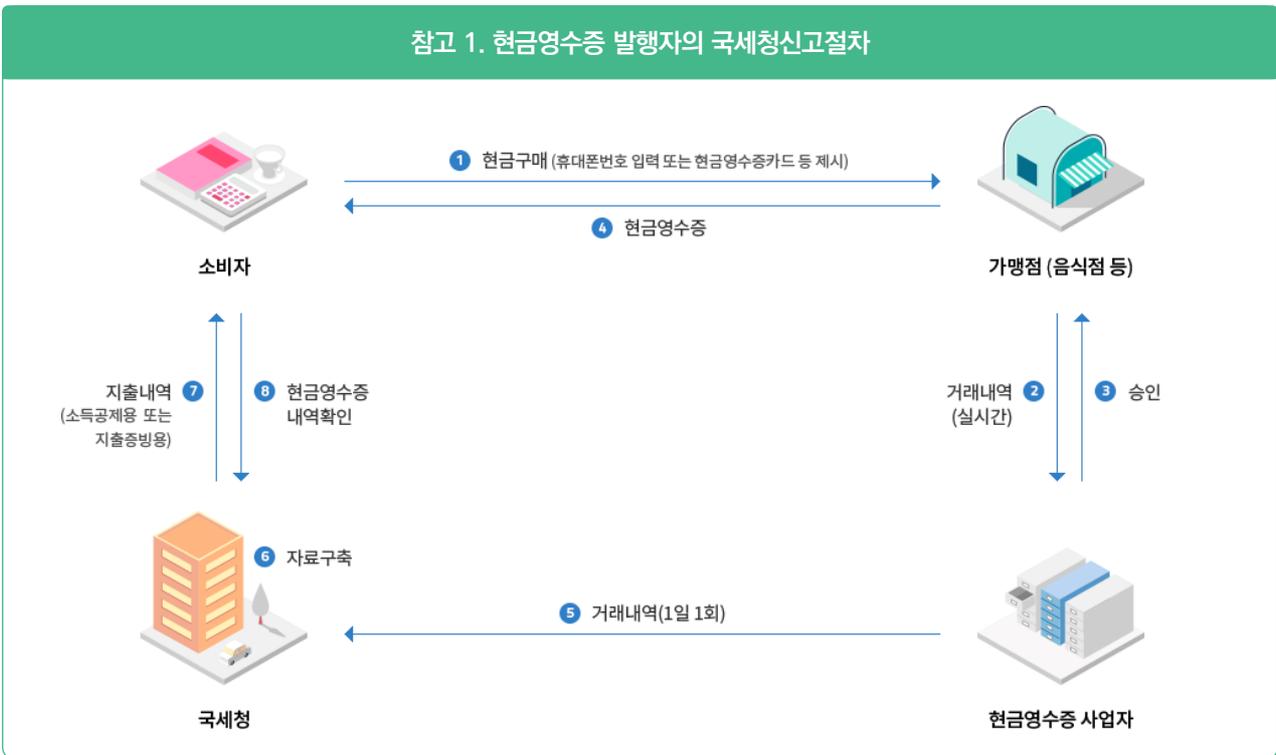


- 1) 계약의 양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청약 의사표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수행
- 2) 이를 근거로 계약서를 작성
- 3) 작성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과업내용 혹은 인도할 목적물 내역 및 계약금액 등의 내용을 기재
- 4) 계약기간 만료 혹은 대금지급일이 도래할 경우 과업내용 혹은 내역서에 따라 검수 후 대금지급을 수행
- 5) 해당 과정 중 공급받는자는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원천세 신고의 방법을 통하여 대가금액에 대해 과세관청에 신고

위 과정을 통하여 신고된 세금계산서 및 원천세를 통해 과세당국은 거래 과정 중 단계별 부가가치의 금액과 해당 경제주체의 발생소비를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된 거래의 프로세스는 계약서의 작성 및 검수 검사의 단계가 생략되며, 계약서 작성 및 검수의 과정이 “구매”행위를 통해 간소화되어 일괄적으로 이루어진다. 해당 과정을 통해 국세청에 대해 거래가 신고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1) 세금계산서 발행, 2) 현금 영수증 발급, 3)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등의 방법이다. 공급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통해 국세청에 품목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혹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현금영수증은 가맹점 등의 자료 제출을 통해 국세청으로 보고된다.



2.4. 미신고 및 탈세 유형

2.4.1. 법정증빙서류 미발행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법정증빙서류 미발행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유형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수행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는 자들에게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결제를 통하지 않고 거래함으로써 당사자들은 조세행정상 소득이 귀속되지 않기에 발생 소득 상당의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해당 문제 뿐 아니라, 거래규모 상당이 생산에 식별되지 않으므로 경제 지표의 왜곡을 발생시키며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기도 한다.

2.4.2.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허위 발행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대 혹은 과소 계상하거나, 혹은 실제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더 많은 매입세액 공제의 혜택을 누리려 하거나 혹은 소득세의 산출근거가 되는 사업소득 금액을 과소신고하려는 시도들에 해당한다.

III. CBDC 발행의 효익 & 비용

3.1. (쟁점) 화폐 발행비용 감소 & 화폐 관리비용 감소 v. CBDC 서비스 유지 비용

	실물화폐	CBDC
일회성	-	초기 시스템 설치비용
반복성	발행비용, 운송비용	전송 등 수수료
지속성	관리비용	시스템 유지관리비용

CBDC 발행의 첫번째 쟁점은 “**명목비용 비교**”이다.

CBDC 발행에 따라 중앙은행은 더 이상의 지폐나 주화 등을 발행할 필요가 없으며, 금융기관 및 개인들은 지폐나 주화의 보관비용 부담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부분에서 비용감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CBDC가 도입됨에 따라 초기 CBDC 시스템 설치비용이 발생하며 CBDC를 위한 전산 시스템 운영비용이 발생한다.

비용편익 분석 상 CBDC가 채택되기 위해서는, 실물화폐를 발행 & 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비해 CBDC의 발행 & 유지 비용이 적거나, 혹은 CBDC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상당의 편익이 요구된다.

3.2. (쟁점) DID 기반 개인장부 시스템 v. 사생활 침해

CBDC 발행의 두번째 쟁점은 “**사생활 침해**” 쟁점이다.

CBDC가 도입되고 실물의 지폐 혹은 주화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개별 경제주체를 DID를 통해 식별할 수 있다고 할 때, 관리기구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특정 시점의 저량과 유량 등을 종합하여 개인 단위의 장부를 구성할 수 있다. 관리당국은 거래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신고된 소득과 비용 그리고 현금흐름의 대조를 통해 미신고 현금에 대한 원인 소명 등을 요청함으로써 결산이 맞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예외에 의한 관리를 시도할 수 있다.

위의 방식은 상기 언급한 “**거래 미신고 & 탈세 유형**”을 식별하는데 용이하다. DID 기반으로 해당 경제주체의 친족관계를 설정한 뒤, 해당자가 관리하고 있는 개별 금융기관 간의 이체내역을 상호 상계하고, 타 경제주체와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거래내역을 소명하게 만들 경우 모호한 이체 내역들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보한 이체 내역들에 대한 경제주체의 소명여부를 기반으로 기존의 신고납세 제도 기반의 법정증빙서류의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미신고 내역을 식별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할 필요 없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조세정책상 추가 세수의 확보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소명의무를 납세자에게 부과시킴으로써 거래 과정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물건/용역의 거래 적발에도 용이하다.

하지만 위의 방식은 사생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활동(예를 들어 이동, 소비 등)에 금전적인 지출이 수반된다. 모든 거래내역을 식별할 수 있다는 말은 곧 경제주체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이는 헌법상 규정된 사생활 보호의 가치와 어긋날 수 있다.

DID 기반으로 개별 거래 내역들을 조회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의 관점에서 국가의 對 납세의무자와의 관계에서 공정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동시에 경제주체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3.3. (효익) 세금 신고의 Timing/Amount의 문제 해소

통상적인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행, 금액, 개별세목 등의 기재에 있어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신고는 후속적으로 경정/수정청구를 통해서 보완이 가능하나, 1) 신고자의 과다 과소 신고의 식별이 불가능할 수 있고 2) 기한 경과 후 이를 보완하는 과정 중에서 기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CBDC를 홈택스 등의 시스템에 연동하여, 이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 금액을 확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발생주의를 의무 적용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신고과정에서 이체시점에 맞는 신고를 통해 Timing의 정확도를, 이체금액을 기준으로 한 신고를 통해 Amount 정확도를 재고할 수 있다.

3.4. (효익) 정책집행에 있어서 효율 및 효과성 확보

현재 정부의 정책 부서에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각 행정기관이 수집 확보한 데이터이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들은 앞서 조세정책 등의 목적으로 일부 포함이 되지 않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신고조차 되지 않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정책부서에서는 정책의 효과를 사후적으로 드러난 지표의 결과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용이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정책이 실질적으로 미친 파급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것이다.

DID 기반의 CBDC를 도입할 경우 정책부서는 손쉽게 정확한 통계데이터들에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령층 중심의 보조금 정책을 기획 및 시행한다고 할 경우, 정부는 보조금을 수령한 계층의 소비행태, 현금흐름, 후생수준 등의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고 지급한 보조금이 어떤 경로로 어떤 사업자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할 수 있다. 반복적인 정책의 기획, 시행 및 결과에 대한 데이터 기반 정책부서는 정책의 효과성을 재고하는데 도움을 주어 경제정책의 효과성을 재고할 수 있다.

3.5. (효익) 집행의 효율성 개선

과거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자금 회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채권금액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한 뒤 판결을 받아 재산조치를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확인된 재산에 대한 압류 추심 등의 절차를 밟아 채권을 보전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재산조치의 이전에 채무자가 자산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한 뒤 파산절차를 밟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면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였다. 하지만 CBDC 방식 하에서는 현금흐름을 추적하여 은닉여부를 좀 더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